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출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연락처	자택				H.P		
직장명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우편물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1조 거래조건

실제소유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소유자란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 고객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동일하다고 간주됩니다.
대출과목		거래구분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일자		인지세

※ 대출이자율은 상품금리와 고객별 우대·가산금리가 포함된 금리이며, 고객이 약정체결 이후 당사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대출기간 연장시 특약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본 약정에 따른 금리감면·가산은 계속하여 유효하기로 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연체이자율	해당 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 방식으로 결정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4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체기간 경과 시점별 - 연체기간 2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3% - 연체기간 2개월 초과 :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3% 약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경과 시점별 - 연체기간 1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3% - 연체기간 1개월 초과 :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3% 		
	연체이자율은 최대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납계좌			
납입방법	자동이체		납입일자
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만료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선 등의 후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기간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 대출자가 이자,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대출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조(거래조건)에 따라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 대출자가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1조(거래조건)에 따라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3조 자동이체제도 이용 등

-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대출자에게 지연배상금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의 일부, 전액상환 및 연체시에는 회사에 직접 납입합니다.
 - 자동납입을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도록 합니다.
 - 납입기일 현재 예금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는 납입일 30일전까지 자동납입변경 또는 해지신청을 하기로 합니다.

제4조 상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해야할 경우 회사는 대출자의 그 채무와 회사에 대한 예예치금(보험계약 환급금 등)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양도, 추심위탁

- 회사는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대출채무가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화될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나 보증보험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지세의 부담

- 약정서의 인지세는 각 50%씩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 다만,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 5천만원이하 : 면제	• 1억원이하 : 7만원
	•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본인(대출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상기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 및 약정일 20 년 월 일
대출신청인(대출자) (인)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서초세무서장
후 납승인
2016년 34017호